Ⅲ 감전사고

편 집 : 손해사정사 박성정[1)]
소 속 : 손해사정법인 가나

판결요지	피해자 측과실	사건번호
[사고발생경위] 배선활선전공이 활선작업이 끝났으니 전주에 올라가 사선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선작업을 하던 도중, 활선작업자가 전선연결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활선쪽 전선을 잘못 취급하여 전기가 흐르는 전선과 스치면서 사선에 전류가 흐르면서 감전됨. [사용자측 과실] 활선작업이 끝났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선작업을 지시하였고, 활선쪽 전선을 잘못 취급하여 사선에 전류가 흐르게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활선작업이 종료되었는지 수신호 등을 통하여 스스로 확인하고 절연장갑을 착용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	15%	대전고법 2003나9955
[사고발생경위] 석제공이 회사 공장 내에 있는 재단실이 덥고 습하자 환기를 위하여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는 재단실 밖 벽체를 낡은 석재가공용 핸드 그라인더로 절단하여 통풍구를 만들다 공업용 전기 380볼트에 감전됨. [사용자측 과실] 전기안전관리공사로부터 보상용 콘덴서를 설치할 것과 전기전선의 노후가 심각하므로 신속히 수리 또는 교체하여 사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석재가공시 발생하는 물로 인하여 누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핸드 그라인더의 외함 등 금속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않았으며,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시 당해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금속제 외함의 낡은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면 전기에 감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누전의 위험성이 없는지 잘 살펴본 후 안전장감을 끼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	40%	서울고법 2003나55495

1)경력20년의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감정사
(前) PNS손해사정법인, (前) PNS법과학기술연구소, (前) 교통방송 및 보험신보 기고,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문위원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 전공(석사) “논문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판례중심)”

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		
[사고발생경위] 비계공이 건물의 3층 높이에서 비계 설치작업을 하던 중, 아래에서 올려주는 쇠파이프를 받아 이미 설치된 비계에 비스듬히 들어 올리다가 건물의 전면 외벽과 2미터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지나가는 22,9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쇠파이프의 끝부분이 닿으면서 감전됨. [사용자측 과실] 건물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고압전선으로 인한 감전사고의 위험을 예상하여 고압전선의 선로이설, 고압전선에 방호관의 설치, 공사기간 동안 해당 구간의 선로에 대한 단전조치 등을 신청하거나 최소한 고압전선과 작업공간 사이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고압전선에 접촉되지 않게 주의하도록 여러차례 교육을 받았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거나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일반작업복과 고무로 반 코팅된 면장갑만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작업을 한 과실	50%	서울고법 2 0 0 1 나 58513
[사고발생경위] 비파괴검사회사의 직우너이 압연공장 건물 내에 설치된 가스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작업을 수행 중, 전기공급실과 안전통로 사이에 오가게 되었는데, 그 사이의 유일한 통로인 부스터바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모르고 부스터바의 전기가 흐르는 부분을 잡아 감전되어 지상으로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감전의 위험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면, 부스터바에 절연관을 설치하거나, 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을 게을리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안전장갑 및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40%	대구고법 99나6099
[사고발생경위] 배전공이 22,900볼트의 특고압이 흐르는 전주 및 전선을 철거하는 무정전특고압 활선작업을 하던 중, 작업조장이 착오로 전류가 흐르는 전선의 철거작업을 지시하여 절단된 전선을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하여 와이어로프를 건네받아 그 한쪽 끝을 완금에 연결한 후 다른 한쪽 끝을 전선에 연결하려고 손으로 잡는 순간 감전됨. [사용자측 과실] 재해방지책임자와 현장대리인이 작업현장에 있지 않았고, 전류가 흐르는 전선의 철거작업을 지시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전류가 끊어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감전방지용 활선장갑을 벗고 전선을 만진 과실.	30%	광주고법 99나273